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900202

신 청 인: 쿠팡 주식회사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피신청인: Grace Heo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내자동)

피신청인: Grace Heo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길 95

분쟁 도메인이름은 "coupangwholesale.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후이즈네트웍스(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9. 8. 19.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9. 8. 19.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9. 8. 19.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9. 8. 20.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9. 9. 9.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9. 9. 9.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 9. 16.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서정일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9. 9. 16.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9. 9. 17.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 회사는 2013. 7.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서, “로켓배송“으로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배송서비스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서(갑 제4호 증)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보호 받기 위해,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 각종 제35류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갑 제5호증 상표 등록원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는 전혀 무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등록,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신청인은 침해되고 있는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coupangwholesale.com“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 “coupangwholesale.com“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신청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표장의 명성 및 양질감에 편승하여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허여 받은 바 없음에도, 2019. 7. 12.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주요 서비스인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을 운영하고 있다(갑 제 2 호증).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coupangwholesale.com“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는 확장자에 불과한 ‘.com’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품 및 영업에 관한 출처로서 널리 알려진 ‘coupang’에 ‘wholesale’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wholesale“은 “도매“를 뜻하는 단어에 불과하므로, “coupangwholesale“은 이 사건

표장에 “인터넷 종합쇼핑몰“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 “wholesale“이 결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그 외관 및 호칭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COUPANG”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등 아무런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COUPANG”이라는 상호 내지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은 사실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표장은 쿠팡 웹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로 부당하게 유인될 우려가 대단히 높기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

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coupangholesale.com>을 말소 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서정일

결정일: 2019년 10월 1일